

#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85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 방범용 CCTV 관제 사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목적

- (1) 현재 운영중인 근무 체계로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주말, 휴일 관제의 공백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365일 24시간 관제 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함.
- (2) 지하1층에 별도 위치한 관제실 근무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으며, 근무인원의 결원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어려움.
- (3) 따라서, 방범용 CCTV 관제사무 수행실적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탄력적 인력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민간위탁의 내용

- (1) 위탁 기간 : 2017. 1월 ~ 12월
- (2) 위탁업체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3) 민간위탁 범위 : CCTV 관제인력 운영 전반

- 근무 장소 : 마포구청 지하1층 통합관제실
- 근무 인원 : 6명 (3조 2교대)
- 근무 내용
  - 통합관제실 내 CCTV 모니터 상시관제
  - 범죄 등 각종 긴급사항 발생시 경찰관에게 신속보고 등

다. 추진일정

-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6. 10월
- (2) 일상감사 및 공고 : 2016. 12
- (3) 업체계약 및 관제실시 : 2017. 1월~

라. 소요예산 : 224백만원(구비)

【3,119,110원 \* 6명 \* 12개월 = 224,575,92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